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11

발의연월일: 2021. 3. 24.

발 의 자:박 정·김민철·이병훈

전용기 · 오영환 · 임오경

이성만 • 이수진 • 유정주

장철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·조각·공예 등 미술작품(조형예술품)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설치 이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이 훼손되어도 방치되는 등 실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. 한편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,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, 미술작품의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할 때,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작품의 다양성 확보 및 작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고, 문화 예술기금을 활용하여 우수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, 우수 작품 홍보 등 건축물 미술작품 진흥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며, 문체부가 설치된 미술 작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 신설).
- 나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3 신설).
- 다.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제9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제11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"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"을 "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사용하여"로, "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"를 "건축물 미술작품(이하 "미술작품"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한다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그 외의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"로 한다.

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2(미술작품의 공모 등)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.
 - 1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 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
 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 -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

•도 조례로 정한다.

제9조의3(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.

제18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제9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9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제9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) ①대통령령으로 정하 | 설치 등) ①-----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 축물을 건축하려는 자(이하 "건축주"라 한다)는 건축 비용 ----건축 비용의 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일정 비율의 금액을 사용하여 을 회화·조각·공예 등 미술 축물 미술작품(이하 "미술작품" 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 다. 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 로 정하며, 그 외의 사항 은 특 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특 별자치도 • 도(이하 "시 • 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 제9조의2(미술작품의 공모 등) ① <신 설>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 을 선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18조(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) 18조(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)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하다.

1. ~ 10. (생략)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 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.
- 1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관
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 방공기업
-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9조의3(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 <u>청)</u>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· 도지사 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 수 ·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

 11. 제9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

 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